

해양수산부고시 제2005-19호

국제대기오염방지 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잠정기준

「국제대기오염방지 적합증서 발급 등에 관한 잠정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고시합니다.

2005년 5월 18일

해양수산부장관

제1조(목적) 이 잠정기준은 「1978년 의정서 및 1997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」의 부속서 VI의 「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」(이하 “국제협약”라 한다)의 이행을 위한 선박의 검사 및 국제대기오염방지 적합증서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선박”이라 함은 해양에서 항행되거나 부유(浮游) 또는 고정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 종류를 말한다.
 - 가.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종류
 - 나.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배종류
- 다. 부유식 또는 고정식 시추선과 플랫폼(platform)
2. “대기오염방지설비”라 함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에 설치되는 설비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) 이 기준은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한다.

제4조(대기오염방지설비의 검사) 선박소유자는 대기오염방지 설비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다음 구분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1. 정기검사 :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행에 사용하고자 할 때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
2. 중간검사 :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와의 중간에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이한 검사

제5조(검사의 신청)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오염방지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
 - 가.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설명서

- 나.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
- 다.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
- 라. 선박용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제어를 위한 검사등에 관한 잠정기준(해양수산부고시 제1999-98호, 1999. 12. 22)에 따른 질소산화물배출 적합증서 및 기술목록
- 2. 최초의 정기검사외의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
 - 가.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
 - 나. 제1호. 가목 내지 라목의 서류(대기오염방지설비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)

제6조(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의 교부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의 유효기간, 유효기간의 기산기준, 효력정지 등 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대행기관지정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검사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대기오염방지적합증서의 교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(이하 “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기술협회
 2.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개시하기 전 대행업무에 필요한 검사원, 검사조직, 검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절차서 등을 준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행업무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8조(연료유공급서등 제공) ①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

각호의 자(이하 “선박급유업자”라 한다)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등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당해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과 함께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급유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
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
② 선박급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기재항목 외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기오염방지설비의 검사의 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검사는 이 기준 시행후 행해지는 최초로 계획된 입거 검사시에 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검사는 2008년 5월 19일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.

제3조(시추선 및 플랫폼의 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전에 건조된 제2조제1호다목의 시추선 및 플랫폼은 2006년 5월 18일까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로 본다.

제4조(유효기간) 이 기준은 2006년 5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●